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36호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의 나드리콜 가입기준을 확대하여 나드리콜 운영 서비스 확장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안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으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택시물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 주　　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택시물류과
- 전　　화 : 053-803-4865,　FAX : 053-220-4865
- 전자우편 : aibuum16@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택시물류과(전화 053-803-4865, 팩스 053-220-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 의견 (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대구광역시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애정도확인”을 “장애 정도를 확인”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즉시이용 :”을 “즉시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약이용 :”을 “예약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기이용 :”을 “정기이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또는 제29조의3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기준) 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 상담원,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기준) ①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① ~ ③ (생 략) ④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서를 받은 후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장애정도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장애 정도를 확인---. ---------- ----------.
	1.·2. (현행과 같음)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① ~ ③ (생 략) ④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또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당하는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3. 정기이용 : 이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 ② ~ ⑥ (생 략)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 1. 즉시이용: ------- 2. 예약이용: ---------- 3. 정기이용: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조례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또는 제29조의3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사람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3.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 신체표현 · 자기조절 ·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특별교통수단)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곤란하고,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조례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14조제3항제3호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3. 삭제

② 조례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자에 한한다.